

2022. 12. 09(금). 10:00

제291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자 치 행 정 위 원 회

2022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변경분 및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의 증·감분 등 반영과 기편성된 예산의 삭감, 집행잔액의 반납 등 세출구조 조정을 통하여 편성된 추경(안)으로써 2022. 11. 25일 제출된 안건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2,574,032,333	2,514,702,506	59,329,827	2.36%
일반회계	2,217,216,101	2,164,888,046	52,328,055	2.42%
특별회계	356,816,232	349,814,460	7,001,772	2.00%
공기업특별회계	197,622,458	197,412,776	209,682	0.11%
상수도사업	81,398,581	81,442,817	△44,236	△0.05%
하수도사업	116,223,877	115,969,959	253,918	0.22%
기타특별회계	159,193,774	152,401,684	6,792,090	4.46%
의료급여사업	1,805,336	1,760,508	44,828	2.55%
발전소주변지원사업	423,491	423,491	0	0.00%
수질개선	39,841,496	40,459,935	△618,439	△1.53%
공유재산관리	31,906,665	31,906,665	0	0.0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47,185	47,248	△63	△0.13%
교통사업	28,086,426	22,883,652	5,202,774	22.74%
도시재정비촉진	1,608	1,608	0	0.00%
지하수관리	1,490,985	1,543,275	△52,290	△3.39%
폐기물처리시설	23,351,486	23,351,486	0	0.00%
개발제한구역주민지원사업	32,239,096	30,023,816	2,215,280	7.38%

먼저 예산안의 총 규모를 보고 드리면
기정예산 2조 5,147억 250만 6천원에 비하여
593억 2,982만 7천원이 증가된
2조 5,740억 3,233만 3천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23억 2,805만원 5천원이 증가된 2조 2,172억 1,610만 1천원이며,
특별회계는 70억 177만 2천원이 증가된 3,568억 1,623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재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세입예산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지방세수입이 238억원,
세외수입이 115억 2,922만 2천원,
지방교부세가 41억 5천만원,
국도비보조금 247억 4,717만 6천원
전입금 36억원 433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재원은 총 593억 2,982만 7천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당위원회 소관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4,046억 3,925만 6천원으로,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18.25%에 해당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국·소별 편성내역을
주요사업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전략기획관 소관 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액 2억 4,360만 2천원보다 36.96% 감소한 1억 5,357만 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 종합민원담당관 소관 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액 12억 553만 6천원보다 0.65% 감소한 11억 9,768만 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 홍보기획관 소관 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액 41억 9,478만 2천원 보다 1.19% 감소한 41억 4,478만 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 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액 8억 7,317만 8천원 보다 1.91% 감소한 8억 5,647만 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 행정기획실 소관 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액 3,161억 7,790만 1천원 보다 3.50% 감소한 3,051억 116만 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액 414억 872만 9천원 보다 0.48% 증가한 416억 735만 4천원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화폐 발행지원 사업의 도비 5억 6,520만원, 국도비사업인 소상공인 호우피해 복구지원 사업 4,56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76억 9,195만 4천원 보다 0.26% 감소한 176억 4,639만 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액의 집행잔액 감액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진접오남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0.17% 감소한 41억 7,367만원,
화도수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2.27% 감소한 44억 2,754만 1천원,

진건퇴계원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44% 감소한 24억 7,104만 5천원,

호평평내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5.47% 증가한 22억 166만 7천원으로 호평동 298-66번지 일원 측구수로관 설치공사 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별내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81% 감소한 32억 4,357만 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부서별 주요내역은 별도로 배부된 예산안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 확정 후 예측하지 못한 사유의 발생과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경, 기타 여건의 변화 등으로 세입세출에 변동사유가 발생하였을때 편성되는 예산안으로, 지방재정법 제4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라고 규정한 법적 요건과 ‘예산 성립 이후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경비의 과부족이 있을 때’ 라는 사실적인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또한, 심사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사업 시기의 타당성과 실수요를 초과하여 과다 계상한 사업은 없는지 금년 내 마무리 될 수 있는지 등 심사 방향을 참고하시어,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